

## 1.7 내 부 거 래 위 원 회 규 정

제정 : 2018. 05. 10.

개정 : 2020. 09. 01.

개정 : 2024. 03. 29.

# 목 차

## 제1장 총 칙

- 제 1조 (목 적)
- 제 2조 (적용범위)
- 제 3조 (권 한)
- 제 4조 (의 무)

## 제2장 구 성

- 제 5조 (구 성)
- 제 6조 (의 장)

## 제3장 회 의

- 제 7조 (종 류)
- 제 8조 (소 집)
- 제 9조 (결의방법)
- 제10조 (부의사항)
- 제11조 (관계인의 출석)
- 제12조 (의 사 록)
- 제13조 (간 사)
- 제14조 (규정의 개폐)

## 부 칙

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## 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 38조 2 에 의한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 ① 위원회는 이 규정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 
②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을 가진다.  
③ 위원회는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을 가진다.  
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을 가진다.  
⑤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4조 (의무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회는 간사로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, 회사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2장 구 성

제5조 (구성)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6조 (의장)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## 제 3장 회 의

제7조 (종류)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 (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개최일 1일 전까지 문서,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상법 제 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

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

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

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

## 부당한 이익제공 등

###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1조 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② 의결에 참석한 이사로서 이의가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 (간사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(제 정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(개 정) 이 규정은 2020년 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개 정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